



대학 내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

제 정 일	2022. 5. 3.
시 행 일	2022. 5. 3.
담당부서	학생처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백석문화대학교 교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,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백석문화대학교 교내(이하 “대학 내”라 한다)에 적용된다.

제 3 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원동기장치자전거는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 제19호의 125cc 이하(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)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
2. 개인형 이동장치는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,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의 이동 수단을 말한다.
3. 공유형 이동장치는 개인형 이동장치 중 사업자와 이용자 간 청약과 승낙 등의 방법으로 임차(이용)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권을 득한 이동 수단을 말한다.
4. 대학관리자는 건물관리자를 말한다.

제 4 조(통행의 금지 및 제한) 총장은 대학 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(區間)에 대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제 5 조(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) 개인이 구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유한 운전자(학내 구성원으로 한정한다)는 운행 전 개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학교에 등록하고 운행하여야 한다.

제 6 조(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) 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.

-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전거 전용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도로 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.
-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와 차량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걸어야 한다.

④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. 이때 도로의 통행은 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.

1.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
2. 자전거 전용도로의 파손, 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
3. 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
4.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

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.

제 7 조(속도 제한 등)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25km/h 이하로 한다.

제 8 조(안전거리 확보 등) ①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, 개인형 이동장치, 자전거, 기차(이하 “차량 등”이라고 한다)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차량 등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,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9 조(보행자의 보호) ①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학 내 도로에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.

②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.

③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주차 장소의 제공) ① 대학교는 대학 내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,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주차공간의 별도 마련이 어려울 경우 주차공간, 자전거 거치장소 공간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 11 조(주차의 금지)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교차로·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
2.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
3.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2미터 이내인 곳
4.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
5.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이내인 곳
6.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
 - 가. 「소방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
 - 나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
7. 건물 출입구
8. 건축물, 구조물, 녹지공간 위
9. 도로, 보도, 테라스, 주차장, 자전거 전용도로 등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
10. 경사로, 계단 또는 연석 등
11. 총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

제 12 조(주차위반에 대한 조치) ① 대학관리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- ② 총장은 제1항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관리자에게 압수를 명할 수 있다. 이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잠금 장치는 제거될 수 있으며, 견인으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학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또한 대학교는 잠금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-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학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그 사실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(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보관중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반환요구 시 총장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소정의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⑤ 제3항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·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⑥ 총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 매각 대금은 대학회계로 세입조치한다.

제 13 조(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) ① 총장은 제12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·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 등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·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·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할 수 있다.
- ③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·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.

제 14 조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)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.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.

제 15 조(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)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제1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, 질병 또는 약물(마약,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16 조(난폭운전 금지)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피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17 조(안전운전 의무)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,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, 도로의 교통상황과 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18 조(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) ①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1. 대학 내 신호등, 교통표지판, 교통 방향 탑승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
2. 포트홀, 움푹 패인 곳, 장애물, 공사장, 보행자,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할 것

것

3.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둔 채 시비·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
 4. 운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 5.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
 - 가.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
 - 나.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
 6. 운전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가. 정지하고 있는 경우
 - 나.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
 7.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헤드폰 또는 이와 유사한 귀마개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8.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
 9. 운전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, 손목보호대, 무릎보호대, 팔꿈치 보호대 등 기타 보호장비 착용 권장
 10. 양손은 항상 핸들바에 올려놓고 절대 한손으로 운전하지 말 것
 11. 운행 시 복장은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되도록 야간에는 운행하지 않을 것. 부득이하게 야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조등, 후미등을 갖추고 각 면에 반사재료나 반사조명을 부착할 것
 12. 그 밖에 총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
- ② 대학 관리자는 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대학 관리자가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 19 조(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) ① 대학 내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, 목격자 등은 사고발생 장소, 사상자의 수 및 부상정도, 재산 피해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대학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대학관리자는 안전사고 접수 시 사고관련자 또는 신고자에게 사고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토록 하고 안전사고 보고서 및 안전사고 진술서 등을 작성·징구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20 조(안전사고의 조사) ① 대학관리자는 총장에게 안전사고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현장 조사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조사 하여야 한다.

1. 사고발생일시
2. 사고발생장소
3. 피해상황(사망자수, 부상자수, 재산피해규모)
4. 사고신고사유
5. 사고발생경위
6. 신고자(소속, 성명, 연락처)
7. 사고당사자(소속, 성명, 연락처)

제 21 조(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) ① 대학관리자는 도로의 지상(地上)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 대학관리자는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·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.

제 22 조(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대학관리자는 대학 내에서 안전질서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대학관계자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한 협의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 <2022. 5. 3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